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11. 20 선고 2018가단51332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주식회사 B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9,392,421원과 그 중 62,463,600원에 대하여 2018. 7. 1.부터 2018. 9. 11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권순호

별지